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212 번호

제출년월일: '97. 2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1. 제 안 이 유

기부금품규제법('95. 12. 30) 및 동법시행령('96. 7. 1)이 전 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 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기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 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기금의 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, 이자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 (안 제3조 제2항)

3. 참 고 사 항

가.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

나.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육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- 1. 시의 출연금
- 2. 이자수익금
- 3. 기타 수입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	정	안
제3조(육성기금 조	성) ①"농촌지도	제3조(+	육성기금	조성)(<u>1</u>)
자육성기금"(이하"육성기금"이라 한					
다)이라함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					
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					
②육성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		②육성2	기금은 ㄷ	h음 각3	호의 재원으로
한다.		조성학	한다.		
1. 국가 또는 지방?	아치단체 및 농업	1. 시의	출연금		
협동조합 등의 출	출연금 -	2. 이자	수익금		
2. 주민 및 농촌지원	<u> </u> 관련기관 단체와	3. 기타	수입금		
참여희망업체 등	이 기탁한 성금				
3. 기금운용으로 생	기는 수익금				
4. 농촌지도자 회원	들의 거출한 회비				
및 출연금					¥)
5. 기타 수입금				a)	

참 고 사 항 (관련법규)

□ 기부금품모집규제법

제5조(국가등 기부금품모집·접수제한)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<u>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.</u>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 <u>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
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

제14조(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)①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 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.

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차지 단체 및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 지사를 거쳐야 한다.